##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6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박민규·강준현·김우영

김종민 · 김한규 · 박홍배

박희승 • 이용우 • 이성윤

유동수 · 조인철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아동수당을 의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제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8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19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9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	지급액) ① <u>19세</u>		
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u>1</u>		
다)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	9세		
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②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8세</u>	<u>1</u> 9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 ④ (생 략)

-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 센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9세
<u></u>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19 <i>\h</i>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지급할수 있다.

② ~ ⑤ (생 략)

•
•
② ~ ⑤ (현행과 같음)
(7) ~ (5) (99) 4 是言)